

1. 개정이유

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48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1. 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(안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18조)

- 1)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·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.

나. 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(안 제16조)

- 1)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.

다. 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(안 제19조, 제20조, 제21조)

- 1) 인증 관련 시설·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·방법,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지원방법)”을 “(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율주행협력시스템”을 “자율협력주행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자율주행협력시스템”을 “자율협력주행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자율주행협력시스템”을 “자율협력주행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)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

제15조(검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)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

제16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) ①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(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란 해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또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준칙에 따른 업무수행 20일 전까지를 말한다.

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전 10일 전까지를 말한다.

③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” 및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”란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한다.

④ 영 제27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.

제17조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신청서)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신청서”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.

제18조(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

2.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하여야 하는 기한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증기관 지정서

2. 인증서 및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인수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와의 계약서 사본

3. 가입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제19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) ①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인증서 생성, 저장, 이용, 폐지 관련 정보 등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

2. 인증서 도난·유출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

3.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

4. 화재·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

5. 그밖에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등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0조(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·방법)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

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최초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: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
2. 제1호 이외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: 직전 보고일로부터 1년

제21조(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1. 제출기간
2. 제출요청사유
3. 제출서류
4.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
5.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.

③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검사 계획서를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조사목적
2. 조사기간과 장소
3.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
4. 조사범위와 내용
5. 제출자료
6.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별지 제11호서식 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전화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
자본금

인증업무의 종류 및 내용

인증업무 제공 대상

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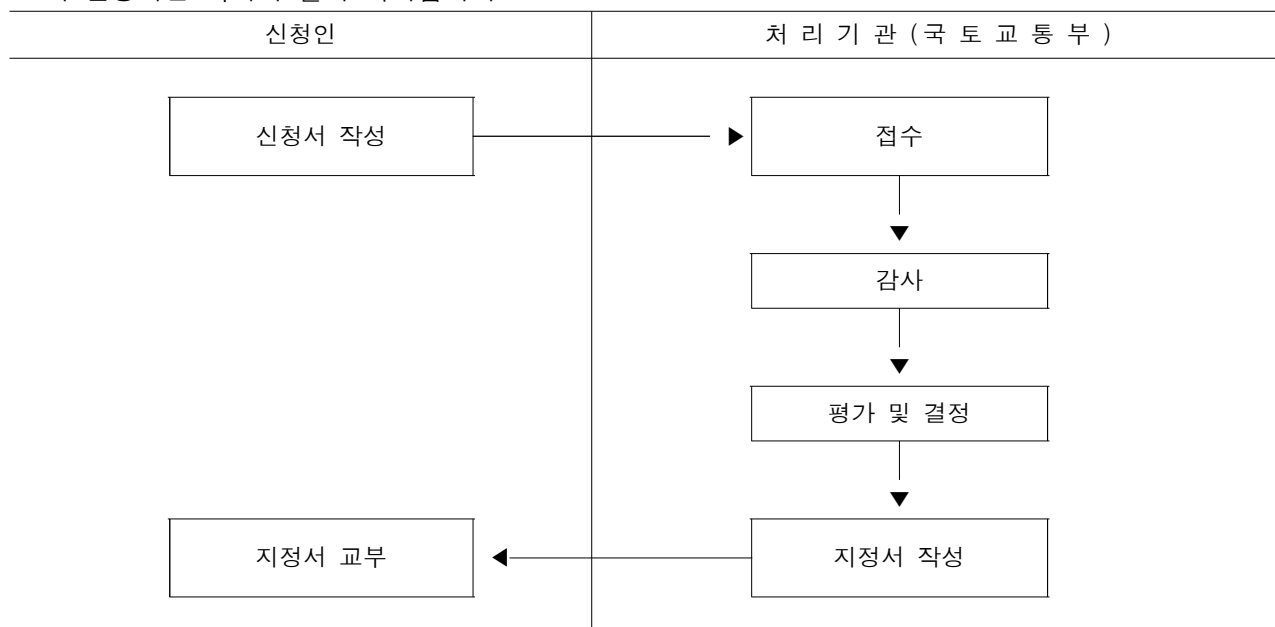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 임원의 기본증명서 1부 2. 정관 1부 3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인증기관지정서

기관명 :

대표자 :

주 소 :

제공업무 :

지정조건 :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[인]

검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전화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
자본금

검증업무의 종류 및 내용

검증업무 제공 대상

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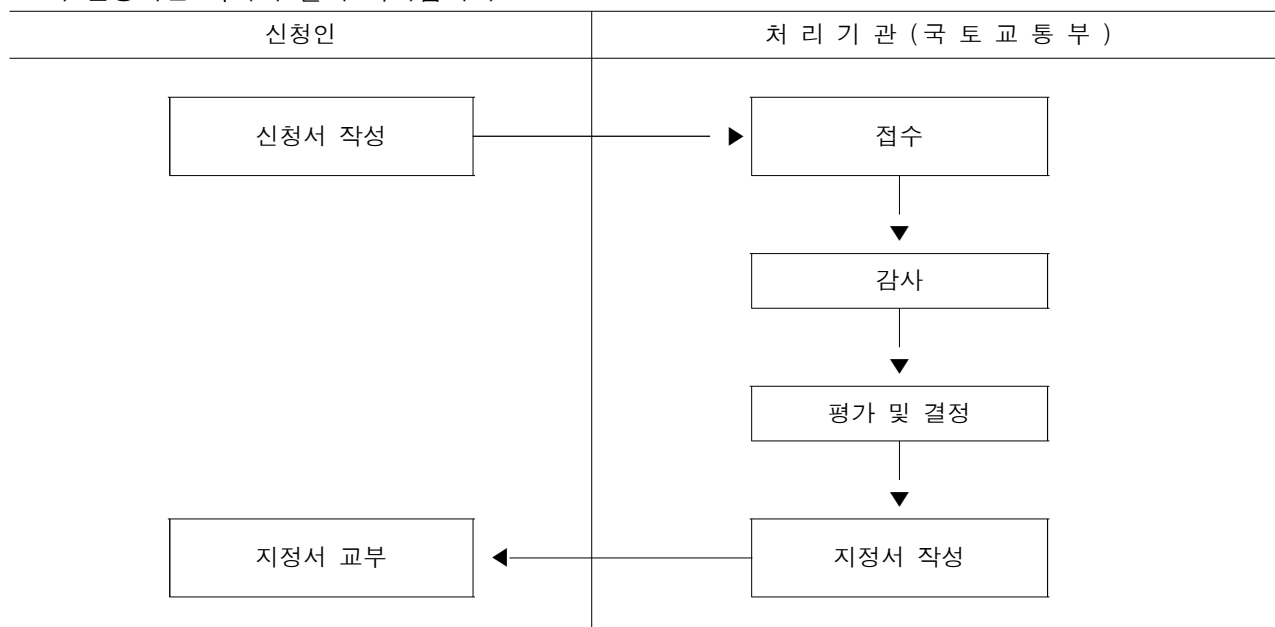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 임원의 기본증명서 1부 2. 정관 1부 3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검증기관지정서

기관명 :

대표자 :

주 소 :

제공업무 :

지정조건 :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[인]

[] 인증
[] 검증

업무준칙

[] 신규
[] 변경

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신고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, 제2항,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, 제2항에 따라 []인증 []검증 업무준칙 []신규 []변경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[]인증기관

[]검증기관

지정취소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전화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사업종료 예정일자		
종료하려는 업무		
지정취소신청 사유		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8호,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[]인증기관 []검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귀하

첨부서류	1.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검증기관 지정서 1부 2.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인수한 인증기관(또는 검증기관) 또는 인증관리센터와의 인계·인수계약서 사본 1부 3. 가입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입자에게 인증기관(또는 검증기관) 지정취소 신청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 지정취소신청 사유서 1부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지원방법)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<u>자율주행협력시스템</u> 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·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.	제2조(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율협력주행시스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밀도로지도의 요건)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제3조(정밀도로지도의 요건) 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자율주행시스템 및 <u>자율주행협력시스템</u> 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	3. ----- <u>자율협력주행시스템</u> ----- -----
제5조(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)	제5조(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	① ----- -----

간(이하 “자율주행 안전구간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
 - 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
3. 4. (생략)
- 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자율협력주행시스템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)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

제15조(검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)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6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) ①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(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란 해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또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준칙에 따른 업무수행 20일 전까지를 말한다.

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전 10일 전까지를 말한다.

③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” 및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”란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한다.

④ 영 제27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17조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신청서)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
<신 설>

<신 설>

지정취소신청서”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.

제18조(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 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 센터

2.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 하여야 하는 기한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증기관 지정서

2. 인증서 및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인수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와의 계약서 사본

3. 가입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제19조(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

<신 설>

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)

①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인증서 생성, 저장, 이용, 폐지 관련 정보 등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

2. 인증서 도난·유출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

3.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 조치

4. 화재·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

5. 그밖에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등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0조(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·방법)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

<신 설>

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1. 최초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
고: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
지정일로부터 6개월

2. 제1호 이외의 안전조치 점검
결과보고: 직전 보고일로부터
1년

제21조(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
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
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
는 검증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
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
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
를 발송하여야 한다.

1. 제출기간

2. 제출요청사유

3. 제출서류

4.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

5.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
법령 및 조항 포함)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
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
하여금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
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

한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.

③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공무원
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
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검
사 계획서를 인증기관 또는 검
증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조사목적

2. 조사기간과 장소

3.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

4. 조사범위와 내용

5. 제출자료

6.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
법령 및 조항 포함)

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